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업 체 정 보	업 체 명	대표자	
	(주)건설근로자건설	단 말 기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주소		
	(04522) 서울특별시 ○○구 ○○○, ○○○○		

업 무 담당자	부서명	직위(급)	성명
	○○○○○부	부장, 팀장	○ ○ ○
	전화번호	FAX	e-mail
	- -	- -	@

신 청 사업장 정 보	공사 착공(예정)일	공사 준공(예정)일	평균(예상)공사기간
	2025. 3. 20.	2025. 7. 31.	4개월
	공사 공종	사업장 (예정)소재지	월평균 투입(예상)인원
	건축/토목 중 택1	○○도 ○○시	7명/월

「2025년도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 안내를 위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5년도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업체 정보 등 관련 업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자 제공 동의 선택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비전아이(주) (주)에이텍시스템 (주)청호ICT (주)휴먼인텍 (주)유니온커뮤니티 케이아이티에스(주) (주)두울테크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사업장 정보	시범사업 안내 및 전자카드 단말기 정보 제공	시범사업 종료 시까지 (‘25.11.30.까지) ※ 예산 소진 시 시범사업 조기 종료 가능

* 전자카드 단말기 지정업체(제조사)

□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관련 안내

- 귀하는 위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시, 「2025년도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 안내 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추진하는 「2025년도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의 안내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상기와 같이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5 년 2 월 26 일

신청인(사용자)

단 말 기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유의사항 확인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	----------------------------------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 유의사항 확인서(사업주용)

1.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은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사업장의 건설사업주가 실제 퇴직공제 가입 성립신고(퇴직공제EDI시스템) 시 '단말기 설치계획서'를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2. 사업주별 3억원 미만 사업장 1개소만 단말기 1대를 5개월 내 지원합니다.
3. 임대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단말기 설치에 대해 홍보하며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지원받은 임대비용은 발주기관 퇴직공제부금 정산 시 제외됩니다.
5. 공사 착공 순으로 임대비용을 지원하여 예산 소진 시 미선정 처리됩니다.
6.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서류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처리됩니다.
7. 공사기간 변경 시, 건설근로자공제회로 기재사항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8. 시공 중 중지기간이 상당한 기간 발생(예상)되는 경우 해당 중지기간 동안 임대비용은 지원되지 않고, 사업연도('25년)을 초과할 경우 단말기 철거 후 재설치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9. 단말기 파손에 관하여 단말기업체의 규정에 따르며, 사용자 과실에 따른 파손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10. 파손 외 단말기업체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단말기업체에서 추가비용 청구 시 건설근로자공제회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1.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착오·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12.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된 임대비용은 환수 하며 향후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 예산 등 특이·변경사항 발생 시, 건설근로자공제회 공급기준에 따릅니다.

본인은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신청하며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서약하며, 신청 미선정 또는 지원 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대표)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귀하